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「도시가스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14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39조의9제5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.

⑥ 전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스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2조의14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39조의9제5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 <u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 <u>④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</u> <u>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</u>

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
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
하는 경우 소집된다.

⑥ 전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스
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
장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8